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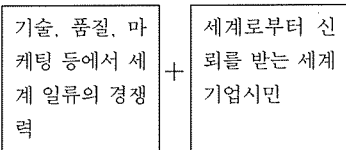
# 21세기 기업세계화의 장기비전 및 전략(Ⅱ)

## 2. 기업세계화의 목표 및 기본 전략

### 1) 기업세계화의 목표와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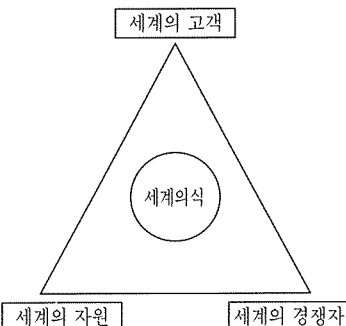
#### 가. 기업세계화의 목표

우리기업은 21세기 기업세계화의 궁극적 목표를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일류기업』으로 하고 지구촌 경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 나. 기업 세계화의 기본 구조

○ 세계의식 : 세계를 의식한 경영이념 및 기업문화(세계시민 의식의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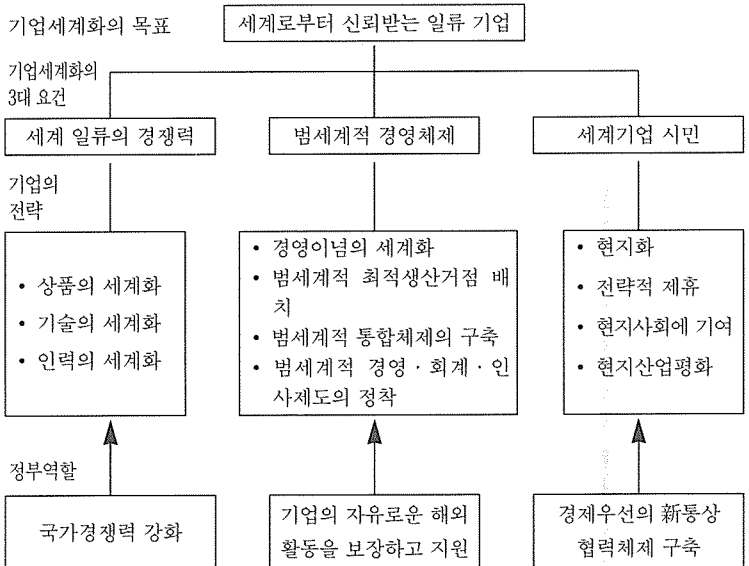
- 세계의 고객 : 세계의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함.
  - 세계의 자원 : 세계를 상대로 자본, 인력, 자원, 기술을 조달하고 활용함
  - 세계의 경쟁자 : 세계의 모든 기업과 경쟁하고 협력함
- 다. 기업세계화의 3대 요건  
이와 같은 기업세계화의 목표와 기본 구도아래서 우리기업이 성공

적으로 세계화하기 위한 3대 요건은 「세계일류의 경쟁력」, 「범세계적 경영체제」, 「세계기업시민」 등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기술, 그리고 인력의 경쟁력이 세계일류가 될 세계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범세계적 경영체제는 세계를 상대로 자원조달과 생산, 그리고 마케팅 조직을 통하여 세계화된 경영

### 기업세계화의 기본전략



이념과 기업문화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세계기업시민은 세계의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협력을 해 나가며, 경영의 현지화 등을 통해 현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현지 노동자와 노사분규나 현지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야 한다.

## 2) 전략적 진출대상국 분석

### 가. 분석총괄

전략적 진출을 위해 고려해야할 52개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7개 요인으로 중분류하여 48개국에 대해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 10대 해외생산기지형 투자유망국의 7개부문 순위

종합 순위	국 가	시장 기회	규제완화 정도	개방성	노동 조건	노동 품질	안정성	사회간접자본
1	중국	1	48	48	1	42	41	38
2	인도	4	38	38	2	47	45	27
3	말레이시아	6	12	8	12	40	10	22
4	태국	5	25	144	3	30	25	25
5	스리랑카	45	33	4	7	34	33	47
6	코스타리카	19	18	3	6	26	30	41
7	아일랜드	24	6	1	32	16	16	14
8	포르투갈	13	22	15	28	27	18	9
9	영국	30	3	13	25	14	21	8
10	베트남	36	47	26	5	36	35	48

나타났다. 7개부문별 순위에 커다란 차이를 보임으로써 모든 면에서의 비

교우위를 확보한 나라들은 없으며 다수국가들이 비교우위를 분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일본은 시장기회, 노동품질 등에서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시장기회와 함께 노동조건에서 유리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들은 전반에 걸쳐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대만 등도 다수 부문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 7개 부문에서의 분석대상국의 순위

순위	시장기회	규제	개방성	노동조건	노동품질	안정성	사회간접자본
1	중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중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2	일본	스웨덴	벨기에	인도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3	미국	영국	코스타리카	태국	미국	대만	프랑스
4	인도	덴마크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5	태국	핀란드	덴마크	베트남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6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독일
7	인도네시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리랑카	대만	네덜란드	그리스
8	독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프랑스	핀란드	영국
9	대만	미국	과테말라	멕시코	스웨덴	캐나다	포르투갈
10	칠레	멕시코	그리스	칠레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스위스
11	과테말라	독일	독일	터키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12	도미니카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	벨기에	미국	벨기에
13	포르투갈	과테말라	영국	말레이시아	핀란드	호주	미국
14	프랑스	아르헨티나	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15	파나마	캐나다	포르투갈	필리핀	캐나다	프랑스	프랑스
16	터키	이태리	스웨덴	과테말라	아일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17	오스트리아	칠레	칠레	도미니카	호주	체코	대만
18	스페인	코스타리카	미국	볼리비아	이태리	포르투갈	일본
19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스페인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20	스위스	콜롬비아	터키	엘살바도르	스페인	벨기에	스페인

## 나. 해외생산기지형 투자의 10대유망국

해외생산기지형 투자란 현지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세계화 유형이다.

해외생산기지형 투자유망국의 순위를 산정하는 데는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 노동조건과 입지비용, 이자율, 사회간접자본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계량하였다.

동 분석에 따르면 해외생산기지형 투자유망국으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10대 해외생산기지형 투자유망국의 주요 지표

순위	국 가	노 동 조 건				공장입지비용 (US\$/m <sup>2</sup> )
		임 금 (US\$/hour)	노동생산성 (US\$/hour)	근로시간 (US\$/hour)	근 면 성	
1	중 국	0.37	0.25	48.00	4.12	41.4
2	인 도	0.80	5.11	46.40	6.06	4.3
3	말레이시아	1.21	4.00	45.60	7.78	24.1
4	태 국	0.92	1.74	51.77	6.22	66.2
5	스 리 랑 카	0.37	0.25	46.50	5.00	2.5
6	코스타리카	1.67	3.41	48.00	6.00	36.3
7	아 일 랜 드	13.53	24.94	40.50	6.49	49.2
8	포 르 투 갈	4.61	10.03	38.90	5.87	15.6
9	영 국	12.84	22.02	43.60	5.34	40.0
10	베 트 남	0.26	0.25	48.00	8.50	5.25

10대 현지 시장접근형 투자유망국의 7개부문 순위

종합 순위	국 가	시장 기회	규제완화 정도	개방성	노동 조건	노동 품질	안정성	사회간접자본
1	중 국	1	48	48	1	42	41	38
2	미 국	3	9	18	26	3	12	13
3	일 본	2	28	41	35	1	5	18
4	말레이시아	6	12	8	13	30	10	22
5	태 국	5	25	14	3	40	25	25
6	독 일	8	11	11	44	2	19	6
7	인 도	4	38	38	2	47	45	26
8	아 일 랜 드	24	6	1	32	16	16	14
9	인도네시아	7	32	34	19	41	42	40
10	프 랑 스	14	21	25	34	8	15	15

10대 현지 시장접근형 투자유망국의 주요 지표

순위	국 가	시 장 규 모		성 장 가 능 성	
		인 구 (백만명)	GDP (US10억\$)	투자/GDP ('89~'93)	GDP 성장률 ( '89~'93)
1	중 국	1,190.0	364.9	37.62	10.02
2	미 국	260.0	6,377.9	13.86	1.51
3	일 본	124.6	4,254.9	31.06	3.97
4	말레이시아	18.9	61.3	33.65	8.70
5	태 국	58.5	123.1	39.87	8.78
6	독 일	80.6	1,879.7	22.26	8.42
7	인 도	890.0	272.2	22.18	4.28
8	아 일 랜 드	3.5	49.3	17.34	5.54
9	인도네시아	189.7	142.8	35.17	6.76
10	프 랑 스	57.9	1,252.7	20.52	0.88

동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다. 현지시장 접근형의 10대 유망국

현지 시장접근형 투자란 피투자국의 현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세계화 유형이다. 현지시장의 규모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인구, GDP규모 및 경제성장률 등의 요인에 높은 가중치를 주고 계량분석하여 시장접근형 투자유망국의 순위를 선정했다.

인구나 GDP규모가 큰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생산기지로써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형 투자유망국으로도 수위를 차지하여 주목을 끌었고 말레이시아, 태국은 현재는 경제규모가 작으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향후 시장 잠재력이 커서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분석된다.

3) 기업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가. 기본방향

기업세계화를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자신이므로 세계경영을 위한 이념정립, 기업전략 수립·추진, 인재양성에 집중 노력하고 정부는 통상환경 조성, 경쟁여건 조성, 인프라, 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통한 경쟁력 뒷받침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자체가 세계화 되어야 하며 정부가 먼저 세계화된 안목과 자질을 가져야 효율적으로 기업세

계화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전환이 불가피 하며 통상산업부의 해외 통상 기능 강화가 요망된다.

「우리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감소하는 반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통상 산업부의 해외통상기능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과거의 「우리기업」	앞으로의 「우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소유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소유기업</li> <li>• 국내외국인투자기업</li> <li>• 해외진출기업</li> </ul>

개도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안정적 진출기반도 조성하고 GNP대비 ODA자금을 현행의 0.05%에서 선진국 수준인 0.33%까지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계화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지방기업이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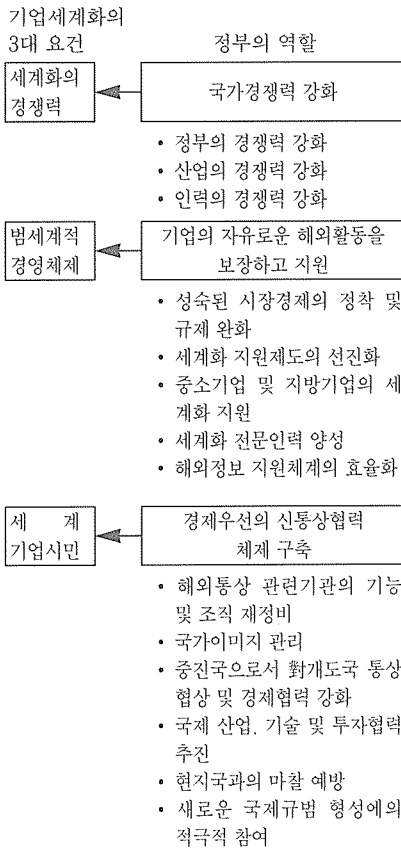
**대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정부지원**

- 국가이미지 관리
- 규제완화
- 통상협력차원에서 해외진출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및 대개도국 경제원조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정부지원**

- 해외정보 지원
- 세계화에 대한 비전 제시
- 조세, 금융, 보험지원
- 현지사회와의 마찰 방지를 위한 이문화 교육

**나. 정부역할의 중점분야**



현재, 국내기술 유출, 역수입 등을 이유로 일부사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의 과감한 축소 또는 철폐가 필요하다.

**규제완화 대상인 해외투자 제한업종**

현행제한사유	제한업종
-기술이전	나임, 폴리에스테르 감량가공업, 모조장신구용 체인제조업
-역수입	배우제조업, 당면제조업 등
-과당경쟁	방직, 직조 및 섬유가공업, 편조업, 기성복제조업

**나. 금액, 비율 및 절차상의 제한 완화**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30만 불까지만 투자가 가능한데, 동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우리측 투자지분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는데, 동 제한을 폐지하고 1천만 불을 초과하는 사업은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허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 절차상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

**다. 사후관리**

투자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원리금회수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 다수의 보고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불필요한 제출서류(예: 원리금 회수보고서)의 수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라. 금융조달**

- 현지금융의 용도제한 폐지
- 현행 용도제한 : 수출입자금,

**3. 정책적 제언**

**1) 성숙된 시장경제의 정착과 규제 완화**

WTO체제라는 새로운 세계환경에 발 맞추어 우리기업이 세계화하려면 우리나라부터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갖지 않으면 안되며, 그간 국내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정착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업의 세계화를 엄매는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 →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가. 해외투자 제한업종의 완화(내지 철폐)**

현지물품수입비, 해외건설, 해외영  
업자금 12개 용도에 한정

○ 외화대출의 용도(용자대상)제한  
완화

－현행 용도제한 : 제조업 및  
SOC용 시설재, 해외투자, 중소기업  
기술도입비, 항공기, 중고선박  
등

## 2) 세계화지원제도의 선진화

### 가. 중소기업 전용 해외투자 자금제도 신설

자금력과 정보면에서 취약한 중  
소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해외투자자금  
신설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공고, 해외  
무역개발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  
지원(3~5% 이자율, 10~15년 상  
환)

### 나. 해외투자자금의 신용대 출 확대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이  
물적 담보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여 담보에 대한 평가를 감정가  
액(통상 현실가액의 80%수준)위  
주에서 현실가액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 대출시 용자심사절 차의 간소화

대출심사를 요건심사와 투자자  
에 대한 신용조사 등으로 한정하는  
심사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한 도 확대

외국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자금  
도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투용자  
자금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80→  
90%로 상향조정)

### 마. 해외투자 손실 준비금의 차등지원

해외투자장려지역, 투자장려 업  
종 등을 지정하여 투자금액의 100  
%까지 차등지원하며 적립금의 익  
금 산입기간도 현행의 3년거치 4년  
분할 익금산입을 일본과 같은 5년  
거치 5년분할하여 익금산입으로 전  
환해야 한다.

### 바. 간접외국세액 공제 인정

자회사 형태의 해외진출이 직접  
형태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간접외국세액공제 허용이 필요하  
다.

### 사. 해외투자보험제도 개선

담보위험을 비상위험 뿐만 아니  
라 합작파트너의 파산으로 인한 체  
무불이행 등 신용위험까지 확대되  
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  
해 사고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손실액의 100%(또는 95%)까지  
우대지원해야 한다.

## 3)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 가. 교육개혁

대학에 세계화전문인력 양성 강  
좌 신설 내지 보강을 위해 세계기  
업 근무시 필요한 회계, 재무, 인  
사, 외국어 등 실무과목과 외국인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외국의 정  
치·문화·역사 등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기존 대학의 교육과정에 세계화  
에 관련된 과목의 추가가 필요하  
다.

### 나.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 전문기관 설립

현행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수  
원을 「(가칭)세계화전문인력양성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유사교육기관(과정)을 동세계화전  
문인력양성대학에 통폐합하고 이  
문화교육시 강사는 주한대사관 외  
교관이나 우리의 해외교포를 활용  
하는 것도 방법이다.

### 다. 외국인이나 해외동포에 대한 특채

이중국적 취득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VISA발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라. 현지 채용인에 대한 국내 교육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  
양회에서 현지 채용인에 대한 교육  
강좌를 신설하고 교육목적의 입국  
자에 대한 VISA발급절차를 간소  
화해야 할 것이다.

## 4) 해외정보 지원체계의 효율화

### 가. 해외정보협의회 구성

해외정보제공기관에서 현재 추  
진하고 있는 D/B를 기관별로 전문  
화시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정보제  
공을 유도하고, 그 대신 각 기관간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나. 주요 교역대상국의 현지 어 통상정보 직역체제 구축

가칭 '통상정보창출사업 조정위  
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어로 된 해  
외 정보를 번역하여 기업에게 제공  
하고 무역협회와 외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외국의 주요 정보기관과 의 온라인 구축

1차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온라인 정보유통망 구축을 추진('95~'96년중)하고 해외정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미·일의 데이터통신관련법, 온라인 정보은행 현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하여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자금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97년 이후 유럽 등 기타 주요협력대상국과의 정보유통망 구축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라. 기술정보시장(Techno-Mart)의 활성화

'95. 5월. 아·태 테크노마트를 추진할 것이며 후술하는 해외기술정보상담회사가 민간차원에서 외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테크노마트를 추진할 수도 있다.

#### 마. 해외기술정보상담 회사 신설방안 검토

기업의 기술거래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선해 주는 기능을 대행해주는 민간차원의 해외정보 제공회사의 설립을 유도할 것이다.

기능으로는 해외관련 산업기술 정보 제공 및 상담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알선하게 된다. 기술도입계약서 작성 등 관련업무도 대행한다.

### 5) 중소·지방기업의 세계화지원 가. 「지방중소기업 세계화지원협의회」구성

지역별로 구성하고 지역협의회와 중앙회간에 네트워크링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고 주요기능으로는 세계화 관련 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경제사절단 파견 협조,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산업기술협력행사 참여 유도 등을 하게 될 것이다.

#### 나. 「지방기업 세계화 지원센터」설립

KORTA지방무역관(현재 10개) 소재지에 1개씩 설치하고 주요 기능으로 「지방중소기업 세계화지원협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세계화의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 다. 「전국지방중소기업인 세계화대회」개최

통상산업부, 내무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중소기업 세계화지원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연2회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방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세계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 세계화대회에는 대한협력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중소기업인을 초청하게 될 것이다.

#### 라. 1개시(도)3개 자매결연 시 갖기 운동

우리 자치단체의 주요산업과 유사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산업이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기술협력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지방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외국기업과의 합작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 마. 해외투자 상담 주식회사 제도의 신설

해외투자 사업의 사업성 조사, 해외투자 사업의 창업을 위한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의 대행, 해외 파견요원의 이문화 교육 및 실무교육(재무, 생산, 노무 및 판매관리 등)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추진방법으로는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중소기업 창업 상담

회사의 지원폭을 확장시켜 중소기업의 해외 창업까지 이 제도를 적용시키면 된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 상담회사의 정부지원 방식은 창업 상담회사 설립시 설립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저리의 이자로 대여해 주고 창업상담시 상담 비용의 50%를 창업 지원 기금으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 6) 해외유관기관의 조직개편

#### 가. 해외공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별 조직개편

현행 해외조직은 남북대결 외교시대인 70년대 수출구조에 근거를 둔 조직인데 수출과 투자비중이 높아지는 유망지역(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조직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 나. KOTRA 해외무역관에 「산업협력관」 파견

기술이나 투자정보에 능한 국내 기술관련 전문기관(생산기술원 등)의 전문가를 해외무역관에 산업협력관으로 파견하며 또는, 기존 KOTRA요원에 대해 국내기술 및 투자관련 교육을 시켜 산업협력관으로 임용하게 될 것이다.

#### 다.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통상 DB」 작성·운영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통상DB로 작성하여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시 활용하게 될 것이다.

### 7) 對개도국 협력사업 강화

#### 가. 개도국 통상담당관 교육 활성화

KOTRA, 전경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통상담당관 교육시 10대 투자유망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동교육시 중소기업인을 참여시켜 우리 중소기업과 유대를 강화시키고 교육받는 개도국 통상담당관을 국내 이문화교육 강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 한국 국제협력사업과 기업세계화의 연계

청년봉사단요원의 파견을 가능하면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10대 유망 협력대상국으로 집중 봉사단 응모와 선발시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요원 우선 선발해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의 체험을 우리기업의 세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사관 등 공공기관이나 개인기업 해외지사요원으로 특채해야 할 것이다.

8) 국가 이미지 개선

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9대 행동강령」제정 및 해외홍보

배포 및 홍보계획으로는 경제4단체에서 주관하여 소책자로 제작하여 해외진출예정 기업에게 배포하고 영문판을 제작하여 외무부 해외공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현지언론에 홍보하고 현지국 정부와 현지 노동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게 될 것이다.

내용으로는 현지 국민과의 협력 강화, 기업이미지 관리에의 주력, 현지산업과의 협력·보완관계 유지, 현지문화의 이해 및 존중, 산업평화 정착에의 최대한 노력, 산업안전대책에의 만전, 현지 환경보호

에의 깊은 배려, 기술 및 인력개발에의 기여, 현지진출기업의 안전 확보 등이 될 것이다.

나. (가칭) 국가홍보전략위원회 구성

○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이미지 홍보업무를 총괄

○ 구성

—공보처, 통상산업부, EPB, 외무부, 통일원, 문화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관광공사,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다. (가칭)한국홍보협회 설립

○ 민간차원의 국가이미지 홍보를 위해 일본의 해외홍보협회 경우와 같이 (가칭)한국홍보협회 설립

○ 경제 4단체 및 정부가 출연

라. 해외교포를 국가이미지 홍보요원으로 활용

○ 주요국에 거주하는 해외교포를 해외홍보요원으로 활용

○ 필요시 일정수당 지급 및 홍보 교육 실시

9) 국제간 산업, 기술, 투자협력 강화

가. 산업기술협력재단 활성화

현재 설치된 한·미,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예산을 확대하여 선진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또한 중국, 유럽국가들과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재단을 설립하여 이들 국가와 산업기술협력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나. 외국의 업종별 단체와의 교류 강화

우리의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에서 우리기업

과 선진기업과의 산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의 업종별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확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비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라. 투자보장협정 체결 확대

정치적 위험이 높은 국가 및 시장경제전환국 등으로 체결국을 확대해 나아가며 주요대상국으로는 홍콩, 인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카자흐스탄, 알제리, 이집트 등 10개국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0) 현지국과의 마찰예방

가. 현지국과의 조세마찰(이전가격문제) 회피

(1) 외국의 이전가격규제 동향

최근들어 미국 등 주요 자본수입국들이 자국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포착이라는 필요에 편승해 외국기업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강화가 국제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타 OECD국가들의 경우도 국제거래에 관한 OECD규정들과 관련하여 외국기업 활동에 대한 과세정책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경우 이들의 주 해외 시장인 미국의 동태에 반응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2) 우리정부의 대응

해외자회사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그 자회사의 향후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한국내 모회사가 자회사의 결손금을 법인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의 도입과 국세청의 외국정부와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3년 10월 미국 IRS는 일본 국세청과 Nissan사건에 대한 상호합의에 도달하여 당초안인 8억 5천만불과 수정안인 2억 3천만불과의 차액인 6억 2천만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도 “과세권자”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과세당국이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기관으로 외국의 과세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겪는 조세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해외진출 우리기업 노사 마찰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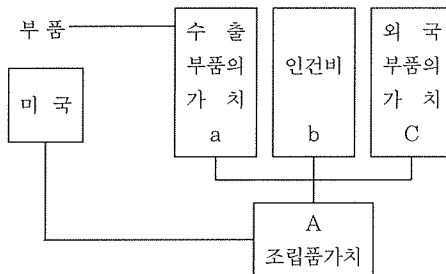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의 기업인 및 현지 노무관리(또는 예정)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노무관리지침서 발간 배포해야 할 것이다.

11) 기타 제안

가. 해외위탁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채택  
미 관세법의 관세특혜제도 현황을 보면 미국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법 시행령 [Ch.a.part 10 (Articles Conditionally Free, Subject to a Reduced Rate, etc), CFR 19, Ch. 1, Part 10 중 § 10.24(Articles Asembled Abroad with United States Components)]은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 등 중간재가 해외에 수출되어 현지에서 값싼 생산공장 또는 조립공정을 거쳐 미국에 재수입될 때 관세감면혜택을 받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 부품을 이용한 조립품의 과세부과의 예>



※ 관세부과시 과세표준 가치=A-a=b+c

미 관세법의 관세감면제 국내 적용을 보면 미국의 이러한 관세감면 제도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부품조달 증가와 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관세법에도 규정되어야 한다.

나. 한국 해외진출기업협회 설립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을 진출국가별로 조직화하고 서울에 가칭 “한국해외진출기업협회”를 설립하여 해외조직망을 총괄토록 하고 주무관청은 통상산업부로 하며, 설립주체는 경제 4단체로 하되 무역협회가 주관이 된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지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통상데이터뱅크」작성, 우리기업의 현지화 지원, 현지국 정부에 공동대응 등을 하게 될 것이다.

다.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경 제분석체제 구축

세계화추세에 부응하여 최근 급격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활동이 우리의 산업구조, 수출입, R&D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외투자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 무역별 투자장벽 보고서의 정기 발간

90년대는 1차적으로 미·일·EU·중국 4개국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나 95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연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주) 본고는 지난 1월호에 이어 연재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